

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7. 05. 16.

1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업무) 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주관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과(부)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3. 현장실습 참여 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, 관리에 관한 사항
4.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전교육 및 상담, 수행점검,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
5. 현장실습 평가 및 업무 개선·발전에 관한 사항
6. 현장실습 운영시기별 실적 내용에 대한 주기적 만족도 및 환류, 보완, 개선 등 체계적 노력에 관한 사항
7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해당업무를 총괄하며 현장실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② 현장실습 참여 업체의 발굴 및 관리, 현장실습 학생 지도, 현장실습 과목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 (행정직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)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**학생취업지원처장**을 위원장으로 하며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22.04.20.)

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2. 센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현장실습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타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213, 2017.05.18)

이 규정은 2017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